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0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용판·지성호

정운천 · 김태흠 · 서병수

양금희・金炳旭・하영제

김영식 · 김형동 · 김정재

한무경 • 김기현 • 허은아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,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.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·도지사에게 있음.

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.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조제5항). 법률 제 호

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5항 전단 중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"를 "시·도지사 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에게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	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
수립) ① ~ ④ (생 략)	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	⑤
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	
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<u>행정안</u>	<u>시·도</u>
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특별	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
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	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
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	에서 같다)에게
<u>다)에게</u> 보고하여야 한다. 이	
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	
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	
시·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	
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	
을 요구할 수 있다.	